

제9조 [준거법 및 관할법원]

본 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고,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신탁계약서, 대출약정서와 일반적인 금융관행에 따르기로 한다.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모든 소송이나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따르기로 한다.

제10조 [일부 무효 등]


본 계약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내용이 법령 기타 사유에 따라 무효,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내용의 효력,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제11조 [기타사항]

- (1)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(2) 근질권설정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상 종료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즉질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본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질권자가 원본 1부를, 나머지 근질권설정자가 원본 1부를 각 보관하기로 한다.

채무자 겸 근질권설정자

투에스대부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7길 13, 5층 (삼성동,프러스원)
대표이사 이 용 문 

채권자 겸 근질권자

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, 6층(여의도동,기계산업진흥회)
대표이사 김 학 형 (인) 

